

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4. 14.(화) 12:00
(지 면) 2026. 4. 15.(수) 조간

정부,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, '무관용 원칙' 엄정 대응

- 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·검거기간 운영, 과학적 수사로 원인 제공자 끝까지 추적
- 실화죄 처벌 강화(3년→5년 이하 징역) 등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강화 추진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와 산림청(청장 박은식)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(금)까지 '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·검거기간'을 운영하며,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.
- 최근 3년간(2023~2025년)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(과태료 부과 4,672건)를 분석한 결과, 불법소각(62.5%), 무단입산(25.9%)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.
-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,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.9%로 일반 방화 사건(85.1%)보다 크게 낮고,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.
- 이에,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·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,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.
-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 하고,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(포렌식)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·검거한다.
- 또한,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, 불법 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.

- 박은식 산림청장은 “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,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·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”이라며,
-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안길주 (044-205-6170)
		담당자	사무관	전동진 (044-205-6181)
담당 부서	산림청 산불방지과	책임자	과 장	금시훈 (042-481-4250)
		담당자	사무관	안우진 (042-481-4257)
		담당자	사무관	정지철 (042-481-4255)



산림재난방지법

[시행 2026. 2. 1.] [법률 제20751호, 2025. 1. 31., 제정]

제76조(벌칙)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제79조(과태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(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)

2.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

③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

2.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,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산림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